

2021년 관광플러스팁스 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창업기업의 관광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관광플러스팁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1일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

1.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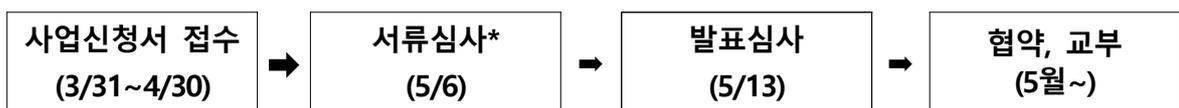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창업기업의 관광분야 신규 진출 및 사업 영역 확대 유인, 융복합 관광 산업 활성화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사업내용

- 사업명 : 2021년 관광플러스팁스 지원 사업
- 대상 : 중기부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또는 팁스(TIPS)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선정규모 : 총 1개 기업
- 사업기간 : 2021년 5월(사업승인일) ~ 2022년 11월 (2개년)
- 지원분야 : 스마트관광 5대 요소*와 연계한 관광분야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
- * 스마트관광 5대 요소 : 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플랫폼
- 지원내용 : 관광사업화자금 45억원(자부담 필수, 지원금의 10% 별도)
- 선정절차 : 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발표심사 → 최종선정
- 주요일정



* 접수 결과 최종 선정규모의 7배수(7개 기업) 이하의 경우, 서류심사를 생략 할 수 있음

2. 세부계획

□ 신청자격

- 중기부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또는 팁스(TIPS) 프로그램 졸업기업 중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중기부 팁스(TIPS) 프로그램 수행 과제를 통해 보유한 기술을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 및 사업화 할 의향이 있는 기업

※ 신청자격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휴업중인 자 또는 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업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지원규모 : 총 1개 기업, 4.5억원 (2개년)

□ 지원분야 (지정공모)

- 스마트관광 5대 요소*와 연계한 관광분야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

* 스마트관광 5대 요소 : 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플랫폼

구분	세부내용	연계 관광 및 기술 요소	
스마트 경험	최신기술(AR/VR/MR/홀로그램)을 활용, 자연문화 역사 등 관광매력 극대화	관광 콘텐츠	VR, AR, MR, 미디어파사드, 인터랙티브미디어, 홀로그램 등
스마트 편의	여행경로 추천 등 여행지 정보 제공, 식당, 체험 등 실시간 예약·선 주문·결제 지원 등	관광 인프라	O2O, 블록체인, 로봇 핀테크,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서비스	다국어번역, 불편신고, 짐배송 등 관광지 현장의 불편에 대한 신속 대응	관광지원 서비스	챗봇안내, 드론, 사물인터넷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자동차, 수요 반응형 버스 등 도시 간 이동 및 퍼스널 모빌리티 등 도시 내 이용 가능한 2차 교통수단	관광교통	공유플랫폼, 라스트마일 자율주행, MaaS 등
스마트 플랫폼	스마트관광도시 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데이터 수집 및 공유	관광 데이터	AI, 빅데이터, Data Analytics 등

□ 지원내용

○ 자금지원 : 관광 특화 사업화자금 지원, 최대 4.5억원 (2개년)

구분	사업기간	지원금액	
		정부지원	자부담금*
1년차 지원	2021년 협약체결일 ~ 11월 (약 7개월 내외)	225,000,000원	2,250,000원
2년차 지원**	2022년 협약체결일 ~ 11월 (약 10개월 내외)	225,000,000원	2,250,000원
합 계		450,000,000원	4,500,000원

* 자부담 : 정부 지원금의 10% 별도 집행, 사업비 인정 항목과 동일

** 1년차 사업 종료 후 중간 평가를 통하여 2년차 자금 지원 지속 여부 결정, 실패 판정 시 사업 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

※ 사업비 인정 항목 [붙임2]

-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등

○ 기타지원 : 관광기업육성펀드* 투자유치 지원, 관광 산업 연계 지원(관광 관련 전문 교육 및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 관광기업육성펀드 : 창업 초기 관광 중소 벤처기업의 금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자한 모태펀드의 자펀드로 관광플러스팁스 선정기업은 주목적 투자 대상에 해당

□ 선정절차

○ 주요일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관광산업 관련성, 사업 확장성 및 지속성 등을 평가하여 상위 7개 기업* 선발(7배수)

*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합산, 최종 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선발

○ 대면평가 : 제출 자료 검토 및 창업기업 대표자 발표(15분) 및 평가위원 질의 응답(10분)을 통한 창업기업 역량, 기술아이템 전문성, 관광 관련성, 사업 확장성 및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위 1개 기업* 최종 선발

*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합산, 최종 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선발

※ 전 평가 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 대표자 불참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3. 31(수) ~ 4. 30(금) 14: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tourventure@knto.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창업기업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 직접 제출 및 접수

□ 제출자료

- ① 신청서 및 사업개요 각 1부 (지정양식) [별첨1]
- ② 사업계획서 1부 (PPT, 자유양식) [붙임1] 작성 가이드 준수(필수기재 항목 포함)
- ③ 팁스 프로그램 협약서 1부
- ④ 팁스 프로그램 최종평가 결과 공문 1부 (졸업기업의 경우에만 제출)
- ⑤ 사업자등록증 1부
-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제출)
- ⑦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대표자) 1부 [별첨2]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사업운영 지침 및 사업 세부관리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행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지원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향후 관광기업 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부정행위 신고센터 안내

-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기업육성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각 수행주체의 부정행위 발견 시 부정행위 신고센터(nocheat@knto.or.kr)로 신고 가능
- 부정행위 적발 시, 심의위원회의 부정행위 판정 후 자격취소, 부정 수급액 환수 및 부정 수급 제재부가금(5배 이내) 등의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

4. 사업문의

□ 사업문의 :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육성팀

○ 담당자 : 홍준기 차장(02-729-9492), 이소영 대리(02-729-9553)

5. 참고사항

□ 사업 추진일정 :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심사(서류 및 발표심사) → 선정 → 협약 → 1년차 사업수행 → 중간평가 → 2년차 사업수행 → 최종평가

①모집공고 2021년 3~4월	→	②선정평가 2021년 5월	→	③협약(1년차) 2021년 5월	→	④사업추진 2021년 5~11월	→	⑤중간평가* 2021년 11~12월
⑥결과조치 2021년 12월	→	⑦협약(2년차) 2022년 2월	→	⑧사업화지원 2022년 2~11월	→	⑨최종평가* 2022년 11~12월	→	⑩결과조치 2022년 12월

*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참고) 중간 및 최종 평가 성공 기준

※ 중간평가 통과 기준 (①.② 모두 충족 시 성공)

- ① 사업 선정 시 설정한 사업화 목표 진도 점검
- ② 사업자등록증 상 관광(과제) 관련 업종 추가

※ 최종평가 통과 기준 (①.② 모두 충족 시 성공)

- ① 사업 선정 시 계획한 관광 시제품 및 서비스 출시
- ② 이하 1개 이상 조건 충족
 - 관광사업 아이템으로 인한 월 평균 매출액 200만원 이상 달성
 - 관광사업 아이템으로 관광플러스팁스 지원금액 이상 투자유치 성공
 - 관광 관련 시제품, 서비스로 인한 계약 체결 1건 이상

붙임 : 1. 제출서류 작성 가이드 1부
2. 관광플러스팁스 사업화자금 인정항목 1부

(별첨) 1. 신청서 및 사업개요 양식 1부
2.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끝.

<신청서 및 사업개요>

1. 작성형태 : 한글파일 (단, 제출 시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
2. 분량제한 : 4페이지
3. 작성내용 : [별첨 1] 작성양식 참조

<사업계획서>

1. 작성형태 : PPT파일 (단, 제출 시 **반드시 PDF로 변환하여 제출**)
2. 분량제한 : 30페이지 이내,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15분 발표)시 활용
3. 작성내용 : 아래의 필수 작성항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필수 작성항목
<p>I. 시장현황 및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현황 및 문제점 2. 관광산업 연관성 - 스마트 관광 연계 내용 포함 <p>II. 해결방안 및 세부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용(예정) 기술 요약 - 중기부 팁스 수행 현황(실적, 성과) 포함 2. 해당 기술 세부내용 3. 해당 기술 개발 현황 4. 업무분장 및 추진일정 <p>III. 사업화 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표시장 및 경쟁사 현황 2. 수익모델 3. 국내외 사업화 세부계획 4. 고용창출 및 기대효과 <p>IV. 재무건전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3년간 재무상태 2. 최근 3년간 재무실적 및 향후 3년 재무 예상성과 <p>V. 팀 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에 사업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성명, 직위,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필수 기재

***IV. 재무건전성 작성 시 참고 양식**

예시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 (예시이므로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가감하여 작성)

단위: 천원				
구분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자산	자산합계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자산총계				
부채	부채합계			
	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	자본합계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예시2) 최근 3년간 재무 실적 및 향후 3년간 재무 예상성과
(예시이므로 사업의 특성에 맞게 가감하여 작성)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 매출액							
2. 매출원가							
3. 매출이익							
4.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5. 영업이익							
6. 영업외 수익							
7. 영업외 비용							
8. 경상이익							
9. 법인세 등							
10. 당기순이익							
주요 가정	매출액증가율	-	%	%	%	%	%
	추정판매량	-					
	추정판매단가(평균)	-					
	이자율(평균)	-	%	%	%	%	%
	기타()	-					

붙임2**관광플러스팁스 사업비 집행 인정항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업계획서 상의 관광 관련 아이템 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관련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상의 관광 관련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비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소속직원이 관광 관련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협약일 이전에 채용되어 있던 기존 직원 또한 과제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기업 대표자의 인건비는 사업비로 지급할 수 없음
지급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관련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등으로 집행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소속 임직원이 관광 관련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임직원이 관광 관련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관련 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